인천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646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인천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6468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28083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말금, 김준동, 박환택, 홍성필, 최단비, 이준석

피고, 항소인1. E

2. F

3.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변론 종결2024. 7. 19.

판결 선고2024. 10. 11.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280831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B는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 3. 29. 접수 제99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2. 11. 15.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은 B의 자녀 G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2023. 1. 12. 법무법인 한수에 대한 B의 소송위임장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23. 4. 20.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2023. 5. 11. 이 법원에 B 명의의 항소장이 제출된 사실, 그러나 B는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22. 8. 9. 사망하였고(위 B 명의 소송위임장이나 항소장은 B의 자녀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3. 12. 4. 이 법원에 피고 B를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심 판결을 받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항소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를 피고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상속인들로의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기 전 B가 사망한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나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과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승환

판사김한울

판사이지현

별지